［별지 제22호서식］

☐ 방사성동위원소사용
☐ 방사선발생장치사용
☐ 방사성동위원소판매사업
☐ 방사선발생장치판매사업

변경허가신청서

처리기간
10일

신청인	①상 호		②사업자등록번호	
	③소 재 지	(전화 :)		
	④대 표 자		⑤주민등록번호	
	⑥사업소명			
	⑦사업장소	(전화 :)		
	⑧담당부서		⑨담 당 자	
⑩허가증번호			⑪발 행 일 자	
⑫변 경 사 항				
⑬변 경 사 유				

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(방사선 발생장치사용·방사성동위원소판매사업·방사선발생장치판매사업)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부장관 귀하

※ 구비서류

1.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1부
2. 공사를 수반할 때에는 공사기간중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강구할 조치를 기재한 서류 1부
3. 허가증 원본

수 수 료
원자력법시행규칙 별표제8호의 수수료표에 의함.

16162-01011민
1997. 7.15.승인

210㎜×297㎜
일반용지 60g / ㎡(재활용품)